

수원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950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9505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2512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영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5. 1.

판결선고 2024. 5. 2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251208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8. 7. 접수 제65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와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9행 및 5면 4행의 각 “D”를 ”C“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9행의 ”이저한“을 ”이전한“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피보전채권이 확실하게 성립되어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피보전채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설령 이 사건 가압류 당시에 C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2022. 9. 14.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2. 11.

1.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3. 10. C를 상대로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1,4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 그에 앞서 C는 2018. 12. 7.경 원고로부터 1,44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2. 9.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이전에 불법행위 당시인 2018. 12.경 이미 성립되었고, 원고가 C에 대한 위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 및 피고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던 2021. 3. 10. 무렵에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 사해의사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21. 3. 10.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진, 판사 박평수, 판사 진현지

별지